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 2024.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방홍보원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방부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2명(5급 2명)”을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74”를 “668”로, 일반직 계 “666”을 “660”으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방호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5”를 “212”로, 행정주사·사서주사·방호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4”를 “163”으로, 행정서기보·방호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10”을 “9”로, 사무운영서기보 “25”를 “2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76”을 “671”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2”를 “53”으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방호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7”을 “214”로, 행정주사 · 사서주사 · 방호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4”를 “163”으로, 행정서기보 · 방호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10”을 “9”로, 사무운영서기보 “25”를 “2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9”를 각각 “157”로, 3급 또는 4급 이하 “119”를 “11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u>2명(5급 2명)</u> 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 ----- ----- ----- ----- ----- ---. ----- ----- ----- ----- ----- ----- ----- ----- <u>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674</u>	<u>668</u>	-6
일반직 계	.		.	.	
	.		.	.	
	.		<u>666</u>	<u>660</u>	-6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방호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 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215</u>	<u>212</u>	-3
행정주사 · 사서주사 · 방호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 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 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164</u>	<u>163</u>	-1
.			.	.	

·	·	·	
행정서기보 · 방호서기보 · 공업 서기보 · 임업서기보 · 시설서기 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 보 ·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u>10</u>	<u>9</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25</u>	<u>24</u>	-1
·	·	·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76</u>	• <u>671</u>	-5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 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2</u>	<u>53</u>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방호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 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217</u>	<u>214</u>	-3

행정주사 · 사서주사 · 방호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 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 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 ·	<u>164</u> · ·	<u>163</u> · ·	-1
행정서기보 · 방호서기보 · 공업 서기보 · 임업서기보 · 시설서기 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 보 ·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	<u>10</u> ·	<u>9</u> ·	-1
사무운영서기보 · ·	<u>25</u> · ·	<u>24</u> · ·	-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방홍보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2항 전단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59</u>	• <u>157</u>	-2
일반직 계	• <u>159</u>	• <u>157</u>	-2
3급 또는 4급 이하	• <u>119</u>	• <u>117</u>	-2
•	•	•	